THE SHARP

# 더샵 디오션시티 2차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더샵 디오션시티 2차 사이버 견본주택(https://더샵디오션시티2차.com)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첨자발표 이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은 홈페이지(https://더샵디오션시티2차.com)로 예약 접수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므로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전화(☎1670-0771)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단,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여, 동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02.02.〉에 따라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거나 종전 규정인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0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 군산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09.)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0.08.09.(포함)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거주제한기간이 6개월 이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특례에 따라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1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각각의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더샵디오션시티2차.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거래 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동법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동주택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보호구역으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등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신고관청으로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br>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공급<br>1순위 | 일반공급<br>2순위 | 당첨자발표 | 자격검증 서류제출<br>(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1.02.22.(월) | 2021.02.23.(화) | 2021.02.24.(수) | 2021.03.03.(수) | 2021.03.06.(토) ~ 2021.03.12.(금) | 2021.03.15.(월) ~ 2021.03.19.(금) |
| 방 법 | 인터넷 청약(08:00 ~ 17:30) | | | 개별조회<br>(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 ■ 더샵 디오션시티 2차 견본주택 방문<br>- 사전방문예약제(구비서류 등 지참) | |
| 장 소 | ■ 더샵 디오션시티 2차 견본주택<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 앱 | | | ■ 더샵 디오션시티 2차 견본주택<br>-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번지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동 규칙 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은 종전 규정인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02.02.〉
>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요건에 관한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 2.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 4.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선정에 관한 제5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주택행정과-4430호(2021.02.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28번지 일원(디오션시티 A5BL)
-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7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5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40세대 포함]
- ■ 입주시기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공급면적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소계 |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기관추천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 특별공급 신혼부부 |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 특별공급 생애최초 | 특별공급 계 | 일반분양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민영주택 | 2020001393 | 01 | 084.9918A | 84A | 84.9918 | 24.6431 | 109.6349 | 44.3574 | 153.9923 | 44.0527 | 442 | 43 | 44 | 88 | 13 | 31 | 219 | 223 | 9 |
| | | 02 | 084.9933B | 84B | 84.9933 | 24.6663 | 109.6596 | 44.3583 | 154.0179 | 44.0534 | 111 | 11 | 11 | 22 | 3 | 7 | 54 | 57 | 3 |
| | | 03 | 084.9719C | 84C | 84.9719 | 24.7375 | 109.7094 | 44.3471 | 154.0565 | 44.0424 | 36 | 2 | 3 | 7 | 1 | 2 | 15 | 21 | – |
| | | 04 | 106.9571 | 106 | 106.9571 | 28.3940 | 135.3511 | 55.8213 | 191.1724 | 55.4376 | 125 | – | 12 | – | 3 | – | 15 | 110 | – |
| | | 05 | 124.9311 | 124 | 124.9311 | 33.0890 | 158.0201 | 65.2019 | 223.2220 | 64.7539 | 54 | – | 5 | – | 1 | – | 6 | 48 | – |
| | | 06 | 143.0800 | 143 | 143.0800 | 41.2831 | 184.3631 | 74.6739 | 259.0370 | 74.1608 | 1 | – | – | – | – | – | – | 1 | – |
| | | 07 | 154.9864 | 154 | 154.9864 | 42.5316 | 197.5180 | 80.8879 | 278.4059 | 80.3346 | 2 | – | – | – | – | – | – | 2 | – |
| 합 계 | | | | | | | | | | | 771 | 56 | 75 | 117 | 21 | 40 | 309 | 462 | 12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오차면적은 각단지의 특정 세대에 합산하여 등기 시 등재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은 필로티를 제외한 1층 세대만을 배정하였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 · 층 · 향 · 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 세대, 원, VAT포함)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동 구분(라인) | 층 구분 | 해당세대수 | 공급금액 대지비 | 공급금액 건축비 | 공급금액 계 | 계약금(10%) 1차 계약시 | 계약금(10%) 2차 계약 후 1개월내 | 중도금(60%) 1회(10%) 2021.07.20. | 2회(10%) 2022.01.20. | 3회(10%) 2022.04.20. | 4회(10%) 2022.08.22. | 5회(10%) 2022.11.21. | 6회(10%) 2023.02.20. | 잔금(30%) 입주지정기간 |
|---|---|---|---|---|---|---|---|---|---|---|---|---|---|---|---|---|
| 084.9918A | 442 | 501동 2,3,5호<br>502동 2,3,5호<br>503동 2,3,5호<br>504동 2,3호<br>505동 1,2,3호<br>506동 1,2,3호 | 1층 | 9 | 51,033,000 | 217,067,000 | 268,100,000 | 10,000,000 | 16,810,000 | 26,810,000 | 26,810,000 | 26,810,000 | 26,810,000 | 26,810,000 | 26,810,000 | 80,430,000 |
| | | | 2층 | 15 | 51,033,000 | 222,867,000 | 273,900,000 | 10,000,000 | 17,390,000 | 27,390,000 | 27,390,000 | 27,390,000 | 27,390,000 | 27,390,000 | 27,390,000 | 82,170,000 |
| | | | 3~4층 | 34 | 51,033,000 | 228,767,000 | 279,800,000 | 10,000,000 | 17,980,000 | 27,980,000 | 27,980,000 | 27,980,000 | 27,980,000 | 27,980,000 | 27,980,000 | 83,940,000 |
| | | | 5~19층 | 254 | 51,033,000 | 240,567,000 | 291,600,000 | 10,000,000 | 19,160,000 | 29,160,000 | 29,160,000 | 29,160,000 | 29,160,000 | 29,160,000 | 29,160,000 | 87,480,000 |
| | | | 20층이상 | 130 | 51,033,000 | 246,467,000 | 297,500,000 | 10,000,000 | 19,750,000 | 29,750,000 | 29,750,000 | 29,750,000 | 29,750,000 | 29,750,000 | 29,750,000 | 89,250,000 |
| 084.9933B | 111 | 502동 4호<br>503동 4호<br>504동 4호<br>505동 4호 | 1층 | 3 | 51,034,000 | 211,166,000 | 262,200,000 | 10,000,000 | 16,220,000 | 26,220,000 | 26,220,000 | 26,220,000 | 26,220,000 | 26,220,000 | 26,220,000 | 78,660,000 |
| | | | 2층 | 3 | 51,034,000 | 217,066,000 | 268,100,000 | 10,000,000 | 16,810,000 | 26,810,000 | 26,810,000 | 26,810,000 | 26,810,000 | 26,810,000 | 26,810,000 | 80,430,000 |
| | | | 3~4층 | 8 | 51,034,000 | 222,966,000 | 274,000,000 | 10,000,000 | 17,400,000 | 27,400,000 | 27,400,000 | 27,400,000 | 27,400,000 | 27,400,000 | 27,400,000 | 82,200,000 |
| | | | 5~19층 | 60 | 51,034,000 | 234,766,000 | 285,800,000 | 10,000,000 | 18,580,000 | 28,580,000 | 28,580,000 | 28,580,000 | 28,580,000 | 28,580,000 | 28,580,000 | 85,740,000 |
| | | | 20층이상 | 37 | 51,034,000 | 240,666,000 | 291,700,000 | 10,000,000 | 19,170,000 | 29,170,000 | 29,170,000 | 29,170,000 | 29,170,000 | 29,170,000 | 29,170,000 | 87,510,000 |
| 084.9719C | 36 | 503동 1호<br>504동 1호 | 2층 | 2 | 51,021,000 | 223,379,000 | 274,400,000 | 10,000,000 | 17,440,000 | 27,440,000 | 27,440,000 | 27,440,000 | 27,440,000 | 27,440,000 | 27,440,000 | 82,320,000 |
| | | | 3~4층 | 4 | 51,021,000 | 229,279,000 | 280,300,000 | 10,000,000 | 1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28,030,000 | 84,090,000 |
| | | | 5~19층 | 29 | 51,021,000 | 241,079,000 | 292,100,000 | 10,000,000 | 19,210,000 | 29,210,000 | 29,210,000 | 29,210,000 | 29,210,000 | 29,210,000 | 29,210,000 | 87,630,000 |
| | | | 20층이상 | 1 | 51,021,000 | 246,979,000 | 298,000,000 | 10,000,000 | 1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89,400,000 |
| 106.9571 | 125 | 501동 1,4호<br>502동 1호<br>504동 5호<br>505동 5호 | 2층 | 3 | 64,222,000 | 277,478,000 | 341,700,000 | 15,000,000 | 19,170,000 | 34,170,000 | 34,170,000 | 34,170,000 | 34,170,000 | 34,170,000 | 34,170,000 | 102,510,000 |
| | | | 3~4층 | 10 | 64,222,000 | 284,678,000 | 348,900,000 | 15,000,000 | 19,890,000 | 34,890,000 | 34,890,000 | 34,890,000 | 34,890,000 | 34,890,000 | 34,890,000 | 104,670,000 |
| | | | 5~19층 | 75 | 64,222,000 | 299,078,000 | 363,300,000 | 15,000,000 | 21,330,000 | 36,330,000 | 36,330,000 | 36,330,000 | 36,330,000 | 36,330,000 | 36,330,000 | 108,990,000 |
| | | | 20층이상 | 37 | 64,222,000 | 306,278,000 | 370,500,000 | 15,000,000 | 22,050,000 | 37,050,000 | 37,050,000 | 37,050,000 | 37,050,000 | 37,050,000 | 37,050,000 | 111,150,000 |
| 124.9311 | 54 | 506동 4,5호 | 2층 | 2 | 75,015,000 | 323,885,000 | 398,900,000 | 15,000,000 | 24,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119,670,000 |
| | | | 3~4층 | 4 | 75,015,000 | 332,285,000 | 407,300,000 | 15,000,000 | 25,73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122,190,000 |
| | | | 5~19층 | 30 | 75,015,000 | 349,085,000 | 424,100,000 | 15,000,000 | 27,410,000 | 42,410,000 | 42,410,000 | 42,410,000 | 42,410,000 | 42,410,000 | 42,410,000 | 127,230,000 |
| | | | 20층이상 | 18 | 75,015,000 | 357,485,000 | 432,500,000 | 15,000,000 | 28,250,000 | 43,250,000 | 43,250,000 | 43,250,000 | 43,250,000 | 43,250,000 | 43,250,000 | 129,750,000 |
| 143.0800 | 1 | 503동 1호 | 최상층 | 1 | 85,912,000 | 443,188,000 | 529,100,000 | 15,000,000 | 37,910,000 | 52,910,000 | 52,910,000 | 52,910,000 | 52,910,000 | 52,910,000 | 52,910,000 | 158,730,000 |
| 154.9864 | 2 | 501동 1호<br>502동 1호 | 최상층 | 2 | 93,064,000 | 484,336,000 | 577,400,000 | 15,000,000 | 42,740,000 | 57,740,000 | 57,740,000 | 57,740,000 | 57,740,000 | 57,740,000 | 57,740,000 | 173,220,000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시행령 제60조)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용 143㎡ 및 154㎡ 주택형의 경우 중도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인당 보증한도 금액인 3억원(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 084.9918A | 084.9933B | 084.9719C | 106.9571 | 124.9311 | 143.0800 | 154.9864 |
|---|---|---|---|---|---|---|---|
| 약식 표기(더샵 디오션시티 2차) | 84A | 84B | 84C | 106 | 124 | 143 | 154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시 정산하기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차계약금 및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 84A | 84B | 84C | 106 | 124 | 143 | 154 | 합 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 10 | 2 | 1 | – | – | – | – | 13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7 | 2 | – | – | – | – | – | 9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2 | 1 | – | – | – | – | – | 3 |
| | 장애인 | | 13 | 3 | 1 | – | – | – | – | 17 |
| | 중소기업 근로자 | | 11 | 3 | – | – | – | – | – | 14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44 | 11 | 3 | 12 | 5 | – | – | 7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66 | 17 | 6 | – | – | – | – | 89 |
| | | 일반공급(25%) | 22 | 5 | 1 | – | – | – | – | 28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13 | 3 | 1 | 3 | 1 | – | – | 21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31 | 7 | 2 | – | – | – | – | 40 |
| 합 계 | | | 219 | 54 | 15 | 15 | 6 | – | – | 309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단,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여, 동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02.02.〉에 따라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거나 종전 규정인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주)디오션시티퍼스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4.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을"(매수인)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시공사 ㈜포스코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위탁자 (주)디오션시티퍼스트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주)디오션시티퍼스트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9.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 **사이버 견본주택 : 더샵 디오션시티 2차 홈페이지(https://더샵디오션시티2차.com)**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번지(☎1670-077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분양문의 **1670-0771** | 전용 84, 106, 124, 143, 154㎡ 총**771**세대

사이버견본주택 오픈 | **https://더샵디오션시티2차.com**